

남 해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 581 호 2017. 4. 21(금)

고 시

- 제2017 - 39호 남해군계획시설(교통시설: 도로, 도시계획도로 소로3-3호 남해도서관~휴먼시아) 실시계획인가 고시 1
- 제2017 - 40호 남해군계획시설(교통시설: 도로, 도시계획도로 소로2-37호 남해군청~서변마을회관) 실시계획인가 고시 4
- 제2017 - 43호 남해군관리계획(상신 관광·휴양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7

공 고

- 제2017 - 372호 차량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 17
- 제2017 - 417호 남해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재공람·공고 21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해군

편집 : 기획감사실(860-3045, 행정 3045)

고 시

남해군 고시 제2017 - 39호

남해군계획시설(교통시설: 도로, 도시계획도로 소로3-3호 남해도서관~휴먼시아) 실시계획인가 고시

도시계획도로(소로 3-3호 남해도서관~휴먼시아)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2017년 4월 12일

남 해 군 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교통시설 : 도로)
- 명 칭 : 도시계획도로(소로 3-3호, 남해도서관~휴먼시아) 개설공사
- ※ 남해군 고시 제2017-6호(2017.1.25.)에 따른 사업명칭 변경
- 기존 : 도시계획도로(소로 3-4호, 남해도서관~휴먼시아) 개설공사
- 변경 : 도시계획도로(소로 3-3호, 남해도서관~휴먼시아) 개설공사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규 모				결 정(M)		금 회(M)		비 고
등급	류별	번호	폭(m)	폭	연장	폭	연장	
소로	3	3	6	6	288	6	288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남해군수
- 주 소 :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로부터 6개월 이내
- 준공예정일 : 착공일로부터 12개월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: 불임참조

[붙임]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·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·주소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연 번	소 재 지		지 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(그권리자)
	읍·리	지번				성 명	주 소	
1	남변리	467	답	125	125	최0철	서울 강남구 삼성로 14	
2	남변리	467-1	답	963	23	최0철	서울 강남구 삼성로 14	
3	평 리	1208-11	답	59	59	홍0애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태기 1길 33	근저당권 (수곡농협협동조합)
4	평 리	1208-6	대	354	14	서0규	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617	근저당권 (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)

○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

연 번	소재지	대상물건		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(그권리자)
		물건의 종류	구조/ 규격	면적/ 수량	성 명	주 소	
1	평리 1208-11	석류나무	R5H2	16주	홍0애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태기 1길 33	근저당권 (수곡농협협동조합)

남해군 고시 제2017 - 40호

남해군계획시설(교통시설: 도로, 도시계획도로 소로2-37호 남해군청~서변마을회관) 실시계획인가 고시

도시계획도로(소로 2-37호 남해군청~서변마을회관)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2017년 4월 12일

남 해 군 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교통시설 : 도로)
- 명 칭 : 도시계획도로(소로 2-37호, 남해군청~서변마을회관) 개설공사
- ※ 남해군 고시 제2017-6호(2017.1.25.)에 따른 사업명칭 변경
기존 : 도시계획도로(소로 2-53호, 남해군청~서변마을회관) 개설공사
변경 : 도시계획도로(소로 2-37호, 남해군청~서변마을회관) 개설공사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규 모				결 정(m)		금 회(m)		비 고
등급	류별	번호	폭(m)	폭	연장	폭	연장	
소로	2	37	8	8	237	8	115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성 명 : 남해군수

○ 주 소 :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○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

○ 준공예정일 : 착공일로부터 12개월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: 불임참조

[붙임]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·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·주소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연 번	소 재 지		지 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
	읍·리	지번				성 명	주 소	
1	서변리	27-7	대	10	10	김0정	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7-3	
2	서변리	305-1	대	18	18	최0익	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4-3	
3	서변리	305-15	잡	2	2	최0자의외1인	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05-9	최0익(53/464)
4	서변리	306-1	도	119	19	신0숙	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06	

○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

연 번	소재지	대상물건		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
		물건의 종류	구조/ 규격	면적/ 수량	성 명	주 소	
1	서변리 27-3	주택	1층슬라브	50	김0정	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7-3	
			2층슬라브	50			
		담장	블록	14.4			
		대문	철재	1식			
		마당포장	콘크리트	1식			
		계단	콘크리트	1식			
		수도		1식			
물탱크	대	1식					
2	서변리 305-1	창고	목조스레트	8	최0익	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4-3	
		담장	블록	10.5			
		대문	철재	1식			
		마당포장	콘크리트	1식			
		아궁이		1식			
3	서변리 305-9	담장	블록	1식	최0자	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05-9	최0익 (53/464)
		마당포장	콘크리트	1식			

남해군 고시 제2017 - 43호

남해군관리계획(상신 관광·휴양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라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(경상남도 고시 제2016-503호, 2016.12.22.)이 고시되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 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)는 남해군(도시건축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4월 21일

남 해 군 수

1. 위 치 :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-1번지(상신매립지)일원
2. 면 적 : 205,400㎡(구역계 변경없음)
3. 남해군관리계획(상신 관광·휴양형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조서: 붙임참조
4. 관계도면 : 실음생략

<붙임>

남해군관리계획(상신 관광·휴양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
- 1.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- 2. 용도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- 3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구역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11	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	관광 휴양형	창선면 상신리 1-1번지일원	205,400	경고 제2007-487호 (2007.11.29)	

4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도로

도로 결정(변경)조서 총괄표

류 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
합 계	2	620	6,470	-	-	-	1	246	1,980	1	374	4,490
중 로	1	374	4,490	-	-	-	-	-	-	1	374	4,490
소 로	1	246	1,980	-	-	-	1	246	1,980	-	-	-

도로 결정(변경) 세부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기정	중로	3	1	12	국지 도로	374	상신리 1-3 답	상죽리 10-9답	일반 도로	-	2007.11.29 (경고2007-487호)	단지내 도로
기정	소로	2	1	8	국지 도로	246	중로3-1	상신리 1-1답	일반 도로	-	2007.11.29 (경고2007-487호)	단지내 도로

2) 주차장

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①	주차장	창선면 상죽리 10-9답 일원	2,780	-	2,780	2007.11.29 (경고2007-487호)	
기정	②	주차장	창선면 상신리 1-1답 일원	850	-	850	2007.11.29 (경고2007-487호)	
변경	③	주차장	창선면 상신리 10-27잡 일원	4,210	증)1,020	5,230	2007.11.29 (경고2007-487호)	
기정	④	주차장	창선면 상신리 1-7답 일원	2,180	-	2,180	2007.11.29 (경고2007-487호)	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3	주차장	○위치이동 및 면적변경 A=4,210m ² →5,230m ² (증1,020m ²)	○기 결정된 주차장 부지에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지역개발구역이 지정(경상남도 고시 제2015-594호, 2015.12.17.)됨에 따라 주차장 위치를 변경코자 함

3) 하수도

하수도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적(m ²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①	하수 처리시설	창선면 상죽리 10-21답 일원	3,740	2007.11.29 (경고2007-487호)	

남 해 군 공 보

(10) 제 581 호

2017년 4월 21일

나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☑ 체육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m ²)			획 지				비고		
		기정	변경	변경후	위 치	면 적(m ²)					
	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
계		52,350	-	52,350					52,350	-	52,350
-	I	52,350	-	52,350	I - 1	창선면 상죽리 10-12번지 일원	28,721	-	28,721		
					I - 2	창선면 상죽리 10-8번지 일원	2,441	-	2,441		
					I - 3	창선면 상죽리 10-3번지 일원	8,147	-	8,147		
					I - 4	창선면 상죽리 10-10번지 일원	2,780	-	2,780		
					I - 5	창선면 상죽리 10-15번지 일원	10,261	-	10,261		

☑ 관광·휴양시설용지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m ²)			획 지				비고		
		기정	변경	변경후	위 치	면 적(m ²)					
	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
계		28,610	감)1,020	27,590					28,610	감)1,020	27,590
-	II	28,610	감)1,020	27,590	II - 1	-	창선면 상죽리 10-27번지 일원	5,230	감)5,230	-	
					II - 2	II - 1	창선면 상신리 1-7번지 일원	8,030	-	8,030	
					II - 3	II - 2	창선면 상신리 1-8번지 일원	2,850	-	2,850	
					II - 4	II - 3	창선면 상신리 1-5번지 일원	3,590	-	3,590	
					II - 5	II - 4	창선면 상신리 1-1번지 일원	3,000	-	3,000	
					II - 6	II - 5	창선면 상신리 1-1번지 일원	850	-	850	
					II - 7	II - 6	창선면 상신리 1-1번지 일원	3,080	-	3,080	
					II - 8	II - 7	창선면 상신리 1-7번지 일원	1,980	-	1,980	
					-	II - 8	창선면 상신리 1-7번지 일원	-	증)4,210	4,210	

☑ 공공시설용지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m ²)			획 지				비고	
		기정	변경	변경후	위 치	면 적(m ²)				
	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14,620	증)1,020	15,640		14,620	증)1,020	15,640		
-	III	14,620	증)1,020	15,640	III-1	창선면 상죽리 10-21번지 일원	3,740	-	3,740	
					III-2	창선면 상죽리 10-3번지 일원	4,490	-	4,490	
					III-3	창선면 상신리 10-27번지 일원	4,210	증)1,020	5,230	
					III-4	창선면 상신리 1-7번지 일원	2,180	-	2,180	

☑ 녹지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m ²)			획 지				비고	
		기정	변경	변경후	위 치	면 적(m ²)				
	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109,820	-	109,820			109,820	-	109,820	
-	IV	109,820	-	109,820	IV-1	창선면 상죽리 10-2번지 일원	91,710	-	91,710	
					IV-2	창선면 상신리 343번지 일원	6,890	-	6,890	
					IV-3	창선면 상신리 5-4번지 일원	5,220	-	5,220	
					IV-4	창선면 상죽리 10-27번지 일원	6,000	-	6,000	

다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☑ 체육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I	I-1	용도	지정용도	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40%이하	
		용 적 륜	100%이하	
		높 이	2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-2	용도	지정용도	소공원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40%이하	
		용 적 륜	100%이하	
		높 이	2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-3	용도	지정용도	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40%이하	
		용 적 륜	100%이하	
		높 이	2층 이하	
		배 치	-	
형 태		-		
색 채		-		
건 축 선		-		

☑️ 관광·휴양시설용지

<기정>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II	II-1	용도	지정용도	식물·화훼 학습원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륜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I-2	용도	지정용도	진입 및 상징광장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륜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I-3	용도	지정용도	특산물판매장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륜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형 태		-		
색 채		-		
건 축 선		-		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II	II-4	용도	지정용도	먹거리 장터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륜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I-5	용도	지정용도	휴게음식점(관광식당)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륜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I-7	용도	지정용도	자동차야영장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륜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형 태		-		
색 채	-			
건 축 선	-			

<변경>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II	II-1	용 도	지정용도	진입 및 상징광장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률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I-2	용 도	지정용도	특산물판매장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률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I-3	용 도	지정용도	먹거리 장터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률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형 태		-		
색 채	-			
건 축 선	-			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II	II-4	용도	지정용도	휴게음식점(관광식당)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륜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I-6	용도	지정용도	자동차야영장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륜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I-8	용도	지정용도	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, 제4호, 제15호,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, 관광휴게시설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용 적 륜		120%이하		
높 이		3층 이하		
배 치		-		
형 태		-		
색 채		-		
건 축 선		-		

공공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III	III-1	용도	지정용도	하수처리시설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륜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		건 축 선	-	

공 고

남해군 공고 제 2017 - 372호

차량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

지능화 및 기동화 되는 차량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『차량방범용 CCTV 설치』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,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4월 7일

남 해 군 수

1. 예고명 : 차량방범용 CCTV 설치

2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3. 주요내용

가. 설치목적

관내 교통 요충지에 『차량방범용 CCTV 설치』 사업을 추진하여 지능화 및 기동화 되는 차량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.

- 나. 행정예고 기간 : 2017.04.07 ~ 2016.04.28(21일간)
- 다. 행정예고 방법 : 남해군 홈페이지(<http://www.namhae.go.kr>)
 - ※ 남해군청 홈페이지(고시/공고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- 라. 설치장소 : 아래 참조
- 마. 촬영범위 및 시간 : 카메라 설치지 100M 이내, 연중 24시간
- 바. 운영관리 : 남해군 행정과
- 사. 사업내용 : CCTV 2대 신설 및 CCTV 28대 설치 목적 변경
 - 차량방범용 CCTV 구축 및 설치목적 변경 대상 : 붙임참조

4. 의견 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 행정과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제출기한 : 2017. 04.07 ~ 2017.04.28(21일간)
- 나. 제출(문의)처 : 남해군 행정과 정보통신팀 (055 - 860 - 3131)
- 다. 제출방법 : 직접제출, 우편, 팩스 중 택일(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)
 - 우편 :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(우 52425)
 - FAX : 055-860-3737
- 라. 기재사항
 -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※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【 붙임 1 】

차량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

사 업 명	차량방범용 CCTV 설치 사업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생년월일	
	주 소	전화번호	
개인정보취급	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	
설치예정위치	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

남해군 차량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7년 4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남해군수 귀하

차량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대상

순번	현장명	주소	대수	설치사유	비고
1	연죽삼거리 남면방향	서면 대정리 700-2	2	범죄예방, 시설안전, 재난재해, 쓰레기무단투기, 법규위반 단속 등 다목적	신설
2	연죽삼거리 서면방향	서면 대정리 555-4	2		이전
3	이동면 원천마을 앞	이동면 신전리 1030-2	1		목적
4	이동↔남면 경계	이동면 용소리 1492-3	2		목적
5	상주치안센터 앞	상주면 상주리 1042-2	2		목적
6	황선교 입구	삼동면 지족리 291-5	2		목적
7	바다의숲 펜션 앞	미조면 송정리 407	2		목적
8	홍원수산 앞	미조면 미조리 768-1	2		목적
9	중현삼거리	서면 중현리 1461-1	2		목적
10	성산삼거리	고현면 도마리 731-1	2		목적
11	남해대교↔노량공원 사이	설천면 노량리 237-2	2		목적
12	황선굴다리	황선면 수산리 403-8	2		목적
13	황선삼천포 대교 입구	황선면 대벽리 5-1	4		목적
13	남해병원 앞	남해읍 차산리 786-10	1		목적
14	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	남해읍 북변리 470-7	1		목적
15	남해초등학교 정문	남해읍 북변리 141-3	1		목적
16	해양초등학교 정문	남해읍 남변리 654	1		목적
17	해양초등학교 후문	남해읍 서변리 182	1		목적
18	남해유치원 정문	남해읍 서변리 263-2	1		목적
19	남해군청 정문	남해읍 망운로9번길 12	1	목적	
합 계			34		

남해군 공고 제2017 - 417호

남해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재공람·공고

남해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·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4월 21일

남 해 군 수

1. 건 명 : 남해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
2. 주요 결정(변경) 입안 내용
 - 가. 위 치 : 남해군 전역
 - 나. 면 적 : 357.67km²
 - 다. 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
 - 용도지역 : 관리지역의 재정비
 - 용도지구 : 취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재정비
 - 기반시설 : 기반시설의 재정비
3. 재열람 사유 : 경상남도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변경사항 재공람·공고
4. 관련도서 : 게재 생략 (남해군 도시건축과 및 각 읍·면사무소 비치)
5. 공람기간 및 장소
 - 가. 공람기간 :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
 - 나. 공람장소 :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해당 읍·면사무소
6. 의견제출방법
 - 가. 군관리계획 재정비(안)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
 - 나. 주소, 성명, 연락처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
 - 다.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
7.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해군 도시건축과(☎055-860-341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